2026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566

제안연월일 : 2026. . .
제 안 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○ ‘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’은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평창군으로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, 단순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관광지로의 전환을 통해 관광생활인구 증대와 관광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,

○ 관광분야 전문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법인·단체에 위탁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

○ 2026 평창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
-「관광진흥법」제80조
-「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1조
-「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10조
-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제4조, 제7조

○ 추진 필요성

- 지역관광추진조직(DMO)운영, 평창관광센터위탁운영, 관광택시·평창시티투어 등 관광사업 운영으로 관광 분야 전문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(사)평창군 관광협의회 위탁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운영으로 관광생활인구 증대 및 지역 내 관광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○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운영

- 사전/정산 신청 접수 및 처리
- 관광사업체 등 관련 업체 친절 서비스 교육
-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온·오프라인 홍보
-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통계관리

라. 민간위탁기간

○ 2026. 4. ~ 2026. 12.(9개월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자격: 평창군 관내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, 관광 활성화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사업수행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

○ 선정: (사)평창군 관광협의회

-「관광진흥법」제8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제3항,「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제10조 적용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민간위탁금 50,000천원(군비)

- 사업추진 인건비, 사업 홍보비 등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○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
- 본 사업은 단순한 여행경비 지원이 아닌 관내 관광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와 현장 밀착형 홍보가 필수적인 사무임
- 민간의 유연한 조직력과 관광 현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조기 안착과 실무 대응면에서 효율적임.

○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
- 평창군 관광협의회는 평창군의 지도·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정한 사업 운영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음.
- 2020년부터 지역관광추진조직(DMO)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.

○ 경제적 효율성

- 기존 사무 위탁 운영을 통해 확보된 인적·물적 인프라를 본 사업의 전담 조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조직 구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

○ 민간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

- 관내 관광사업체와의 강력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 및 가맹점 가입 독려를 추진하여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소비 촉진을 이끌어 낼 수 있음.

아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추진현황

- 공모사업 신청: 2026. 1. 30.(금)
- 공모사업 선정: 2026. 2. 26.(목)

○ 향후계획

- 업무협약 체결 및 국비 교부: 2026. 3월 중(한국관광공사)
- 사무위탁 협약 체결: 2026. 4월 중((사)평창군 관광협의회)

관계규정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**위탁**할 수 있다.

□ 관광진흥법

제80조(권한의 위임 · 위탁 등)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, 협회, 지역별 · 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 · 검사기관, 자격검정 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6.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

※ **제47조의7(관광산업 진흥 사업)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· 제도의 조사 · 연구 및 기획
2. 관광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 · 발전 지원
3. 관광산업 전문인력 수급분석 및 육성
4. 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
5.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 · 육성
6. **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**

□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

제11조(관광사무의 위탁)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, 단체 및 기관에 **위탁**할 수 있다.

1. 관광안내소 운영
2. 관광상품의 개발・홍보・마케팅

3. 관광박람회・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
4. 내・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(팸투어)사업
5.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
6. 관광시설의 관리・운영
7. 관광관련 공모전
8. 그 외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

□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제10조(업무 및 사업지원) 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.
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(이하 “보조금”이라 한다)으로 지원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지원에는 「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」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제7조(의회의 동의)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.